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78호 2026. 5. 4.(월)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제2026-1312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3
제2026-1348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16
제2026-1386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제2026-1388호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제2026-1389호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공고 39
제2026-1391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의 공고 41
제2026-139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49
제2026-1399호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9
제2026-1404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제2026-1405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고 시】

제2026-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06
제2026-86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12
제2026-8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3
제2026-91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117
제2026-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변경) 고시· 118
제2026-93호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127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5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35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매년 수수료 단가를 누리집에 별도로 공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조례 별표에 단가 및 산정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
- 마을별 거리표가 오류작성됨에 따라 해당 사항 수정
- 고정된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향후 추가 개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 개편

2. 주요내용

- 마을별 운반거리를 그룹화하여 일괄적용함에 따라 그룹별 거리표 중앙값을 적용함으로써 거리적용의 형평성 확보
- 마을별 운반거리 재산정을 통한 오류 사항 정정
- 매년 물가지수를 확인하여 공고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수수료 현실화 필요시 원가산정 용역을 통하여 단가 수정
- 운반 기준단가 : 1,550원/km, 수집 기준단가 : 22,100원/m³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하수도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7945 / FAX: 041-840-37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041-840-7945)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를 “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 수수료 = 마을별 운반 단가* + [수집 기준 단가 × 분뇨처리량(m³)]

* 마을별 운반 단가 = 운반 기준 단가 × 마을별 거리(km)**

** 마을별 거리는 배출지부터 처리장까지 왕복 거리

2. 수수료 산정 참고사항

가. 마을별 거리

마을별 거리 (km)	읍면동	마을명	비고
2	웅진동	웅진2통, 웅진3통, 웅진4통, 웅진5통, 웅진7통	
7	우성면	평목리	
	중학동	중동1통, 중동2통, 중동3통, 중동4통, 중학1통, 중학2통, 중학3통, 중학4통, 반죽1통, 반죽2통, 반죽3통, 반죽4통, 봉황1통, 봉황2통, 봉황3통, 봉황4통	
	웅진동	웅진1통, 웅진6통, 교동1통, 교동2통, 교동3통, 교동4통, 교동5통, 교동6통,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산성1통, 산성2통, 산성3통, 산성4통	
	옥룡동	옥룡1통, 옥룡2통, 옥룡3통, 옥룡4통, 옥룡5통, 옥룡6통, 옥룡7통, 옥룡8통, 옥룡9통, 옥룡16통, 옥룡20통	
	금학동	봉정동	
	신관동	신관16통, 신관41통, 신관42통	

12	우성면	신웅리, 옥성1리, 상서1리, 상서2리, 도천리
	금학동	검상동, 금학1통, 금학2통, 금학3통, 금학4통, 금학5통, 금학6통, 금학7통, 금학8통, 태봉2통, 주미동, 태봉1통, 오곡1통, 오곡2통
	옥룡동	옥룡10통, 옥룡11통, 옥룡12통, 옥룡13통, 옥룡14통, 옥룡15통, 옥룡17통, 옥룡18통, 옥룡19통, 옥룡21통, 소학동
	신관동	신관1통, 신관2통, 신관3통, 신관4통, 신관5통, 신관6통, 신관7통, 신관8통, 신관9통, 신관10통, 신관11통, 신관12통, 신관13통, 신관14통, 신관15통, 신관17통, 신관18통, 신관19통,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22통, 신관23통, 신관24통, 신관25통, 신관26통, 신관27통, 신관28통, 신관29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2통, 신관33통, 신관34통, 신관35통, 신관36통, 신관37통, 신관38통, 신관39통, 신관40통, 쌍신동
	이인면	만수리
	월송동	금흥1통, 금흥2통, 금흥3통, 금흥4통, 금흥5통, 금흥6통, 금흥7통, 금흥8통, 금흥9통, 금흥10통, 무릉동, 월송1통, 월송2통, 월송6통, 월송7통
	우성면	대성1리
17	이인면	오룡리, 신흥리, 주봉1리, 주봉2리, 용성1리, 초봉리
	우성면	단지리, 방문1리, 방문2리, 내산1리, 내산2리, 동곡리, 귀산1리, 귀산2리, 대성2리, 옥성2리
	신관동	월미1통, 월미2통
	의당면	울정리, 청룡1리, 청룡3리, 청룡4리, 청룡5리, 청룡6리, 청룡7리, 수촌2리
	우성면	동대리, 반촌리, 목천1리, 보흥1리
	옥룡동	신기2통, 상왕3통
	월송동	송선1통, 송선2통, 월송3통, 월송4통, 월송5통, 월송8통

22	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옥룡동 월송동 계룡면	운암리, 이인리, 목동리, 발양리, 용성2리, 구암1리, 구암2리 청룡2리, 오인리, 요룡1리, 요룡2리, 수촌1리, 유계리 한천리, 목천2리, 방흥리, 보흥2리, 오동리 신영3리 상왕2통, 신기1통, 상왕1통 석장리동, 동현1통, 동현2통 화은1리, 화은2리	
27	우성면 사곡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이인면	용봉리 신영1리, 신영2리, 호계2리, 화월1리, 화월2리 대학1리 기산1리, 기산2리 마암1리, 마암2리 두만리 상룡리, 화봉1리, 화봉2리, 북계2리 달산리, 산의리, 북룡리	

32	이인면 탄천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신영1리, 신영2리, 반송리, 이곡리 대학2리, 운곡리, 삼각1리, 삼각2리, 광명리, 장선1리 북계1리, 석송리, 평정1리, 평정2리, 전평리 어천리 계실리, 호계1리, 해월1리, 해월2리, 고당1리, 고당2리 봉명리, 월암리, 내흥2리, 죽곡리, 향지1리, 향지2리, 유평1리 봉곡1리 장원1리	
37	탄천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계룡면 반포면	유하리, 견동리, 정치리, 성리, 송학1리, 송학2리, 국동리, 안영1리, 안영2리, 덕지리, 남산1리, 분강리, 장선2리 월곡리, 가산리, 중흥1리, 중흥2리, 도신리, 덕학리 운궁리, 쌍달리, 장원2리, 보물리 안양리, 봉현리 가교1리, 대중리 선학리, 영정리, 평소리 중장2리, 중장3리, 유평2리, 하대1리, 하대2리, 하대3리, 화현리, 금대1리, 금대2리, 상성리, 월곡리 공암1리, 공암2리, 공암3리, 봉곡2리, 봉곡3리	

42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화정1리, 화정2리, 남산2리, 가척리 내흥1리, 구왕1리, 구왕2리, 중장1리, 양화2리, 경천1리, 경천2리, 경천3리 송곡1리, 송곡2리, 하신리, 온천1리, 온천2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광정2리, 광정3리, 고성리, 어물리 죽당리 가교2리, 운암1리, 운암2리 산정1리, 동원1리, 동원2리, 백룡1리, 백룡2리, 화흥리	
47	유구읍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	만천2리, 백교2리 양화1리 상신리, 학봉1리, 학봉2리 사현1리, 사현2리, 대산1리, 대산2리, 인풍리, 월산1리, 월산2리, 태성리 회학리 산정2리, 산정3리, 대룡1리, 대룡2리, 입동리, 청흥리, 조평1리	
52	유구읍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	만천1리, 석남1리, 석남2리, 석남3리, 유구1리, 유구2리, 유구3리, 녹천1리, 백교1리, 구계2리 문천리 월가리, 부곡리, 유룡리 용수리, 쌍대리, 조평2리, 봉갑리	
57	유구읍 정안면	녹천2리, 녹천3리, 신영1리, 신영2리, 동해리, 구계1리, 노동리 내문리	

62	유구읍 정안면	신달1리, 신달2리, 입석리, 연종리 산성리	
67	유구읍	명곡1리, 명곡2리, 추계1리, 추계2리, 세동리, 덕곡리	
72	유구읍	문금1리	
77	유구읍	문금2리, 탑곡리	

나. 운반 기준 단가 : 1,550원/km

다. 수집 기준 단가 : 22,100원/m³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u>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u></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 ----- -----.</p> <p>1. ----- ----- ----- ---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 041-840-7921)

[관계법령 등 발췌문]

「하수도법」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및 신조 사유 : 신관동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교체
2. 공인 폐기일 및 신조 공인 최초 사용일 : 2026. 5. 4.
3. 폐기 공인 내역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신관동	공주시신관동장인 제증명발급전용	니트릴고무 2.1×2.1 훈민정음체		
	공주시신관동장인 제2제증명용	니트릴고무 2.1×2.1 훈민정음체		

4. 신조 공인 내역

부서명	공인명	규격 (재질/크기/글자체)	인영	비고
신관동	공주시신관동장인 제1제증명발급용	우레탄(특수고무) 2.1×2.1 훈민정음체		
	공주시신관동장인 제2제증명발급용	우레탄(특수고무) 2.1×2.1 훈민정음체		

공주시 공고 제2026-1386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으로 조례 위임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 범위에 맞게 기간별로 차등 조정(안 제8조)
 -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개정) 최초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 경감

3.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 ~ 2026. 5. 26.(22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6일까지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세무과

- 주 소 : (우 32552) 공주시 봉황로 1

- 전 화 : 041-840-8191 / FAX : 041-840-371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세무과 과표팀 (☎ 041-840-8191)

제출방법 ☐ 우편 :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FAX : 041-840-371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법 제75조의2제1 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 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법 제75조의2제1 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 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 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 다.</u>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 보완)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 횟수 및 심의·의결 방식 등 미비한 사항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 (이용료 등 조정)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 요일 및 시간을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정비 (안 제9조제5항, 제6항)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 1회 개최,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심의방법으로 서면회의 추가 등

- **이용료 및 운영 요일(시간) 조정** (안 제15조제1항 별표1)
 - **캠프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
 - * 아토틀링캠프, 시민대상 힐링캠프 적용
 - 성인 50,000원(+15,000원 증) / 초등학생 이하 20,000원(+5,000원 증)
(미취학 아동 포함)
 - **운영 요일 및 운영 시간 조정**
 - 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 (일요일 · 공휴일 및 야간 삭제)
-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 (안 제15조제3항)
 - **이용료 감면 규정(의무 → 재량) 변화**
 - 이용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 **(그 밖에) 개정 요청사항 반영 등**
 - **(연 입)** 단 한차례만 → 두 차례만 (연입규정 개정사항)
 - **(준 용)** 누락된 준용 조례(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반영
 - **(공 개)** 센터 운영 평가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재량)
 - **(정 비)** 잘못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월) ~ 2026. 5. 26.(화) /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휴양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 휴양공원과(휴양정책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
- E-mail : dignitaryai@korea.kr
- 전화번호 : 041-840-8562 / FAX : 041-840-376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휴양공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휴양공원과 휴양정책팀 (☎ 041-840-8562)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 (32602)

☒ FAX : 041-840-3769 E-mail : dignitaryai@korea.kr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본관동** :”을 “**본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관동** :”을 “**별관** :”으로, “**가족탕**”을 “**실내가족물놀이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숙박동** :”을 “**치유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본관동과 별관동**”을 “**본관, 별관 및 치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휴양공원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1. 환경·보건·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4항 본문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의 제목 “(위탁 운영)”을 “(운영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관리자가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을 감면한다”를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시해야”를 “제시하여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중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 · 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본관동</u> : 대강당, 교육실, 운 동실, 체험실, 건강측정실, 환 경놀이실,쉼터,강사대기실, 사 무실, 모유수유실, 식당, 그 밖 의 부속시설</p> <p>2. <u>별관동</u> : 족욕 · 건식반신욕 장, 체험실, <u>가족탕</u>, 샤워실, 그 밖의 부속시설</p> <p>3. <u>숙박동</u> : 체류형치유실, 그 밖 의 부속시설</p> <p>제6조(시설의 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u>본관동과 별관동의 운영시간</u> 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u>숙박동의 1일 이용시간은 당 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로 한다.</u></p> <p>제8조(의료인의 배치) 시장은 센</p>	<p>제5조(시설) ----- ----- -----.</p> <p>1. <u>본관</u>: ----- ----- ----- -----</p> <p>2. <u>별관</u>: ----- -----, <u>실내가족물놀 이실</u>,-----</p> <p>3. <u>치유관</u>: ----- -----</p> <p>제6조(시설의 운영) ① · ② (현행 과 같음)</p> <p>③ <u>본관, 별관 및 치유관</u>----- ----- ----- -----.</p> <p><삭 제></p> <p><삭 제></p>

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에 필요한 교육 · 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한다.

제9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문화국장

2. 휴양공원과장

3. 기획감사실장

4. 환경 · 보건 · 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제9조(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휴양공원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1. 환경 · 보건 · 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

<신 설>

<신 설>

⑧ (생략)

제11조(위탁 운영) ① (생략)

<신 설>

② ~ ④ (생략)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생략)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1조(운영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2조(위탁의 해지) -----

-----.

1. 제11조제3항-----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이용료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1.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한다.

⑤ (생략)

제17조(운영평가) ① (생략)

제13조(이용방법) ① -----

----- 관리자가 운영하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 제시하여야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평가) ①·② (현행과

<신 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같음)

③ 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

--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시설명	면적	기 준	이용료		비 고
				평일	토요일	
본관	대강당	252m ²	오전	70,000	90,000	1. 이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2.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액 100분의 20을 가산
			오후	80,000	100,000	
	교육실 운동실	48m ² 53m ²	오전	40,000	60,000	
			오후	50,000	70,000	
	체험실	35m ²	오전	20,000	40,000	
			오후	30,000	50,000	
별관	체험실	54m ²	오전	40,000	60,000	
			오후	50,000	70,000	
치유관	체류형 치유실 1동~7동	30m ²	오전	30,000	50,000	
			오후	50,000	70,000	

2.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 원, VAT포함)

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횟수(회)	연간인원(명)	이용료	비 고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교육	일반	5	150	무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교육	초·중등	15	225	무료	
방과후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초·중등	6	110	무료	
비대면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영유아, 초등	10	400	무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실	초등	1	30	무료	
생활 속 환경성질환 예방교실	일반	5	75	무료	

나.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횟수(회)	연간인원(명)	이용료	비 고
아토피친구를 구해줘	영유아	5	100	5,000	
미세먼지 이견뚫지	영유아	5	100	5,000	
마음공감미술	영유아, 초등	15	200	5,000	
자연 속 환경성질환 치유교실	영유아, 초등	24	300	20,000	텃밭체험 10:00~11:30
어린이 환경성질환 현장체험학습	영유아, 초등	10	120	10,000	숲체험 10:30~14:30
어르신 생태환경교실	65세 이상	5	130	무료	
성인단체힐링	일반	30	400	20,000	
임산부 숲속힐링	일반	6	80	무료	
아쿠아테라피 (족욕, 건반신욕, 실내가족물놀이실)	일반	-	-	10,000 / 60,000	족욕 10,000원 건반신욕10,000원 실내가족물놀이실 60,000원
건강측정	일반	-	-	무료	

다. 캠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 상	운영횟수(회)	연간인원(명)	이용료	비 고
아토타힐링캠프	환경성질환 관심가족	8	150	20,000~ 50,000	성인 50,000원 초등학생 이하 20,000원 (미취학아동 포함)
취약계층 아동 휴양캠프	취약계층 아동가족	2	40	무료	드림스타트 연계
시민대상 힐링캠프	일반	4	60	20,000~ 50,000	성인 50,000원 초등학생 이하 20,000원 (미취학아동 포함)

비 고

1. 본 프로그램의 운영횟수와 연간인원은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인단체 힐링 및 아쿠아테라피 프로그램에 한하여 공주시민, 은누리공주시민은 5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30% 할인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할인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프로그램 중 체험 프로그램과 캠프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공 주 시 장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3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4,708원) 이하인 세대
 - ※ 제척 : 최근 3년 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내용 : '25년 중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 지원기간 : 연간 1회

3. 신청접수

- 기 간 : 2026. 5. 6. ~ 2026. 5. 20.
- 장 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방문접수에 한함

※ 문 의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 (☎ 041-840-7682)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1. 국토교통부와 공주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 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거주자 사망 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6,474,708원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 재산의 소득환산	
② 자동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 × 환산율(100% × 1/3)
일반재산	③ 토지 : 공시지가 ÷ 지역별 적용율 × 환산율(4.17% × 1/3)
	④ 주택·건축물 :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제공) ÷ 시가 보정율 0.9 × 환산율(4.17% × 1/3)
	⑤ 전·월세 보증금 × 환산율(4.17% × 1/3)
	⑥ 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환산율(4.17% × 1/3) ※ 차령 6년 초과 자동차,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⑦ 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 환산율(6.26% × 1/3)
■ 공제	
⑧ 기초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⑨ 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6. 5. 6.부터 2026. 5. 20.까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반포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이 보조 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1부. 5. 비용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공고 제2026 - 1391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개소)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송선동 423-5	송선동 190-2	L=1.2km			소교량 2개소 등	2024.1.	2026.12.	하천 정비	

○ 변경사항 : 토지세목조사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소하천 정비사업 명칭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나. 공사의 개요

- 사 업 량 : 하천정비 L=1.2km, 소교량 2개소 등
- 총사업비 : 4,767백만원
- 공사위치 : 공주시 송선동 196번지 ~ 642-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 행 자 : 충청남도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일

- 2024년 1월 ~ 2026년 12월(36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실시설계도서 : 공주시청 건설과 하천계획팀 열람가능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 리 자 : 공주시장(건설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위치도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월별 공종별	비율 (%)	공사기간																		비고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26 개월	28 개월	30 개월	32 개월	34 개월	36 개월			
축제공	50.04																					
호안공	32.37																					
구조 물공	1.09																					
교량재 가설공	2.79																					
포장공	6.59																					
공통 부대공	7.12																					
누계	10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90	100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사업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7,795	1,645	1,300	2,500	2,350	

12.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23년 2월 이후 ~
- 보상절차 및 방법 :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지급
- 보상가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13. 기타사항

- 위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건설과(☎041-840-7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끝.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6필지				74,407	23,692						
1	송선동	427	천	532	55	국 (건설교통부)					
2	송선동	670	도	1,825	61	국 (국토교통부)					
3	송선동	426	답	403	125	국 (국토교통부)					
4	송선동	423-1	답	323	195	국 (국토교통부)					
5	송선동	423-5 (423)	답	6,678	57	전***** *****중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구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대표자	
6	송선동	423-6 (423)	답	6,678	33	전***** *****중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구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대표자	
7	송선동	423-7 (423)	답	6,678	225	전***** *****중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이*구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	대표자	
8	송선동	424	답	571	519	국 (국토교통부)					
8	송선동	424-1	답	103	103	국 (국토교통부)					
10	송선동	423-2	답	112	70	국 (국토교통부)					
11	송선동	642-10	제	1,219	1,219	국 (건설부)					
12	송선동	642-9	답	102	102	국 (건설교통부)					
13	송선동	145	답	415	415	국 (건설교통부)					
14	송선동	145-1	답	864	104	국 (건설교통부)					
15	송선동	423-3	답	256	74	국 (건설교통부)					
16	송선동	423-4	답	333	211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7	송선동	642-1	천	2,808	1,970	국 (건설부)					
18	송선동	642-13	전	662	566	국 (건설교통부)					
19	송선동	642-11	제	1,176	809	국 (건설부)					
20	송선동	428-6	답	1,266	1,080	국 (건설교통부)					
21	송선동	428-4	답	74	74	국 (건설교통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송선동	428-3	답	374	337	국 (건설교통부)					
23	송선동	642-14	답	171	156	국 (건설교통부)					
24	송선동	642-159	답	29	5	국 (건설교통부)					
25	송선동	642-156	제	436	184	국 (건설부)					
26	송선동	642-137	천	1,109	1,047	국 (건설부)					
27	송선동	642-161	답	2	2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8	송선동	642-234 (642-16)	답	434	52	공주시					
29	송선동	642-153	제	712	549	국 (건설부)					
30	송선동	642-152	답	795	103	국 (건설교통부)					
31	송선동	642-231 (642-4)	답	879	4	공주시					
32	송선동	642-232 (642-5)	천	226	63	공주시					
33	송선동	642-154	답	1,030	1,030	국					
34	송선동	642-233 (642-6)	답	796	71	공주시					
35	송선동	642-139	제	4,683	3,042	국 (건설부)					
36	송선동	191-1	답	2,021	2,021	공주시					
37	송선동	191-3 (191)	답	684	209	공주시					
38	송선동	190-6 (190-2)	천	1,960	1,954	공주시					
39	송선동	190-5	천	205	107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0	송선동	674-1	도	206	84	국 (건설부)					
41	송선동	198-1	답	1,974	28	국 (건설교통부)					
42	송선동	196-1	천	954	763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3	송선동	196-3	천	297	105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4	송선동	197	천	436	194	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5	송선동	197-1	천	526	21	국 (건설교통부)					
46	송선동	642-160	제	48	48	국 (건설부)					
47	송선동	642-15	제	102	102	국 (건설부)					
48	송선동	138-3	천	158	158	윤*림	서울 성동구 신당동 ****-**				
49	송선동	138-2	답	168	168	공주시					
50	송선동	138-5 (138-4)	답	1,234	143	공주시					
51	송선동	138-1	천	242	242	윤*림	서울 성동구 신당동 ****-**				
52	송선동	642-235 (642-18)	답	417	90	공주시					
53	송선동	642-17	제	911	700	국 (국토교통부)					
54	송선동	130-6 (130)	대	660	1	공주시					
55	송선동	130-7 (130)	대	660	2	공주시					
56	송선동	130-8 (130-5)	전	625	28	공주시					
57	송선동	130-3	답	368	60	국 (국토교통부)					
58	송선동	130-4	답	476	43	국 (국토교통부)					
59	송선동	129-2	답	16	16	국 (기획재정부)					
60	송선동	129-3 (129)	전	5,381	487	공주시					
61	송선동	129-4 (129-1)	답	3,901	237	공주시					
62	송선동	192-2 (192)	답	2,116	18	공주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명 :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3	송선동	196-3 (196)	천	1,029	46	미등기		김*근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수정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64	송선동	196-2 (196)	천	1,029	700	미등기		김*근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수정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65	송선동	674	도	339	131	국(건설부)					
66	송선동	193-5 (193-1)	천	510	74	공주시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24-2489호(2024. 9. 4.)로 열람 · 공고한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7-1번지 일원의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주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7-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48,956㎡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26년 5월 04일 ~ 5월 18일
-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정안면사무소,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5월 04일 ~ 5월 18일
-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서면 제출

3. 기타사항

- 관련도면 등은 게재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1부.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화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입안(안)	변경	변경(안)		
①	정안 화봉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산27-1번지 일원	1,048,956	-	1,048,956	-	-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입안(안)	변경	변경(안)		
합 계	1,048,956	-	1,048,956	100.0	
체육시설용지	378,976	증) 33,388	412,364	39.3	
골프시설	296,311	증) 12,420	308,731	29.4	
건축시설	11,744	감) 1,214	10,530	1.0	
부대시설	70,921	증) 22,182	93,103	8.9	대체도로 72㎡ 중복결정
관광휴양시설용지	6,124	증) 1,291	7,415	0.7	
공공시설용지(도로)	6,550	증) 10,888	17,438	1.7	
도로	3,860	증) 155	4,015	0.4	
단지 내 도로	2,690 (72)	증) 10,733	13,423	1.3	
녹지용지	657,306	감) 45,567	611,739	58.3	
완충용녹지	400,551	감) 247,551	153,000	14.6	
기타녹지(복원녹지)	-	증) 169,298	169,298	16.1	
원형보전녹지	256,755	증) 32,686	289,441	27.6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입안(안)	중로	2	A	15	국지 도로	208	정안면 화봉리 520	정안면 화봉리 530	일반 도로	-	-	-
변경(안)	중로	2	A	15	국지 도로	215	정안면 화봉리 520	정안면 화봉리 530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입안(안)	-	중로 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208m - 면적 : 3,8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장의 원활한 진입과 주변도로와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변경(안)	-	중로 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215m - 면적 : 4,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장의 원활한 진입과 주변도로와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 입안(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048,956	-	1,048,956	
-	1BL	1,048,956	1-1	782,217	체육시설용지
			2-1	6,124	관광휴양시설용지
			3-1	3,860	공공시설용지(도로)
			4-1	219,776	원형보전녹지
			4-2	30,284	
			4-3	6,695	

■ 변경(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048,956	-	1,048,956	
-	1BL	1,048,956	1-1	734,662	체육시설용지, 완충용녹지, 기타녹지(복원녹지)
			2-1	7,415	관광휴양시설용지
			3-1	4,015	공공시설용지(도로)
			3-2	13,423	단지 내 도로
			4-1	245,023	원형보전녹지
			4-2	2,320	
			4-3	697	
			4-4	5,930	
			4-5	31,954	
4-6	3,517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1-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체육시설업을 위한 시설용도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마, 시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규정에 의한 관광 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이	▷ 4층 이하(20m 이하)	
II	2-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 카, 파, 하, 러(안마시설소 제외)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5층 이하(20m 이하)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변경)

■ 입안(안)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북측 화봉평정길 접속교차로 개선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속차로 설치 : B=3.5m, L=55m(테이퍼 15m 포함) - 가속차로 설치 : B=3.5m, L=70m(테이퍼 15m 포함) - 우회전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진출입 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각 시설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0.0~12.0m, 2차로
주차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비 15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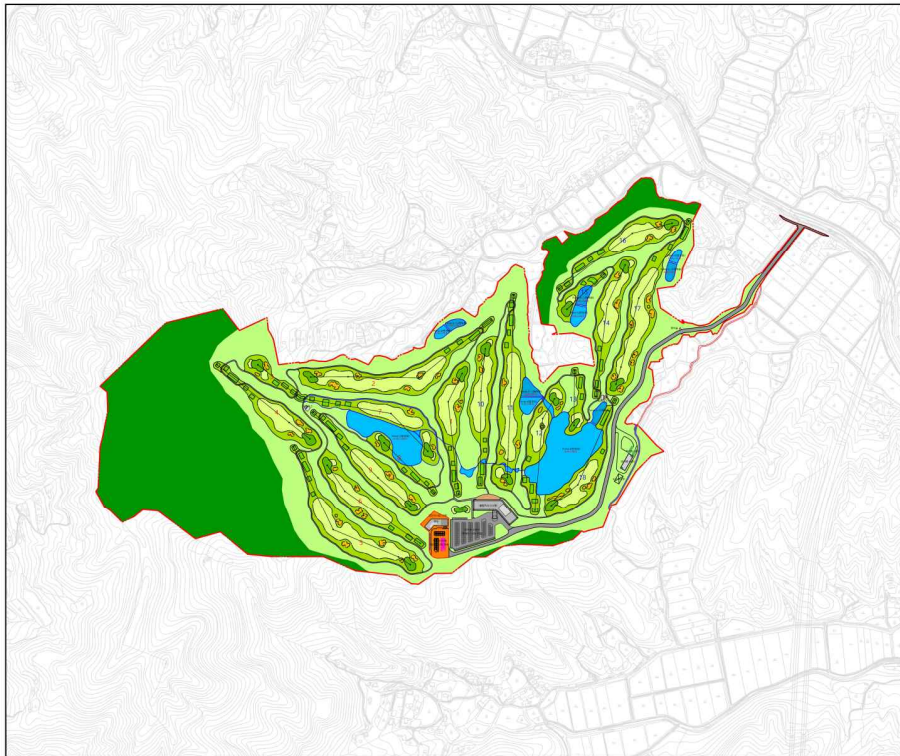
■ 변경(안)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북측 화봉평정길 접속교차로 개선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속차로 설치 : B=3.5m, L=55m(테이퍼 15m 포함) - 가속차로 설치 : B=3.5m, L=70m(테이퍼 15m 포함) - 우회전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8.0m) - 경보형경고등 설치(점멸운영)
진출입 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각 시설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0.0~12.0m, 2차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클럽하우스 출입구 전면에 회차로 및 드롭존 공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반경(R) 6.0m, 차로 폭원 4.5m - 대기공간(폭 2.5m, 4대분) 별도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내 교차로 가각부에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주차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비 150%이상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가. 세부시설배치계획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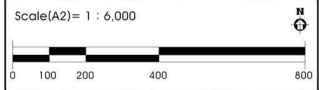
입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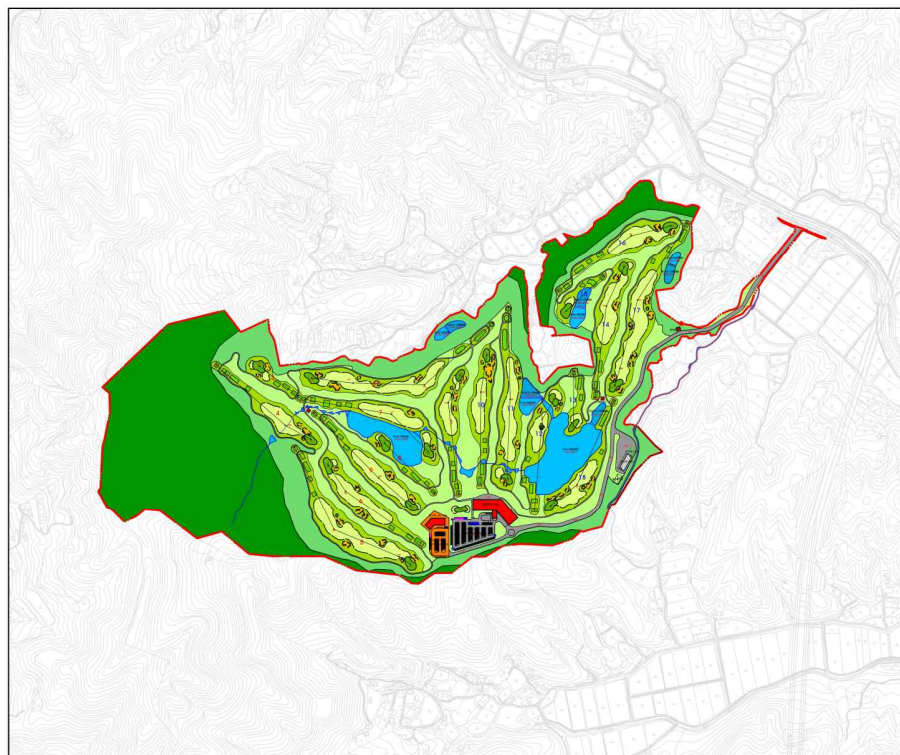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외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세부시설배치계획(안)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체육시설**
 - 티
 - 러프
 - 패워웨이
 - 그린
 - 벙커
 - 건축시설**
 - 클럽·티하우스
 - 숙박시설
 - 관리동부지
 - 부대시설**
 - 주차장
 - 도로
 - 카트도로
 - 저류지
 - 농로
 - 관리도로
 - 녹지용지**
 - 조성녹지
 - 원형보전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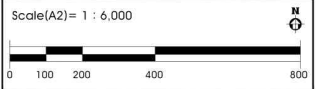
변경(안)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외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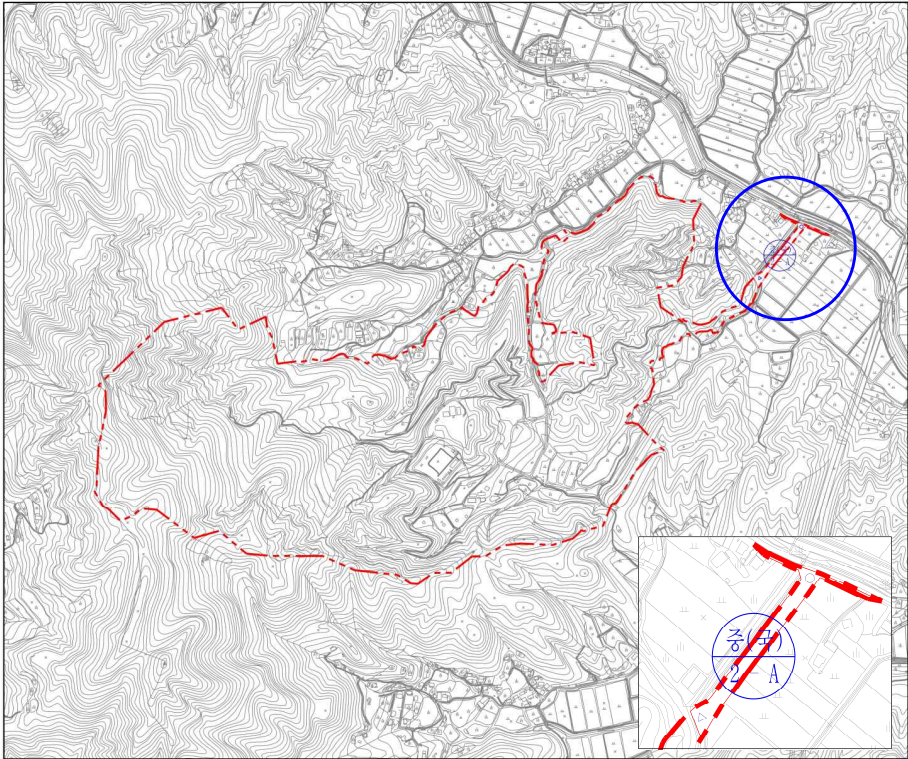
세부시설배치계획(안)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체육시설**
 - 티
 - 러프
 - 패워웨이
 - 그린
 - 벙커
 - 건축시설**
 - 클럽·티하우스
 - 숙박시설
 - 관리동부지
 - 부대시설**
 - 주차장
 - 도로
 - 카트도로
 - 저류지
 - 농로
 - 관리도로
 - 녹지용지**
 - 완충용녹지
 - 기타녹지(복원녹지)
 - 원형보전녹지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입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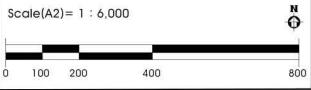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화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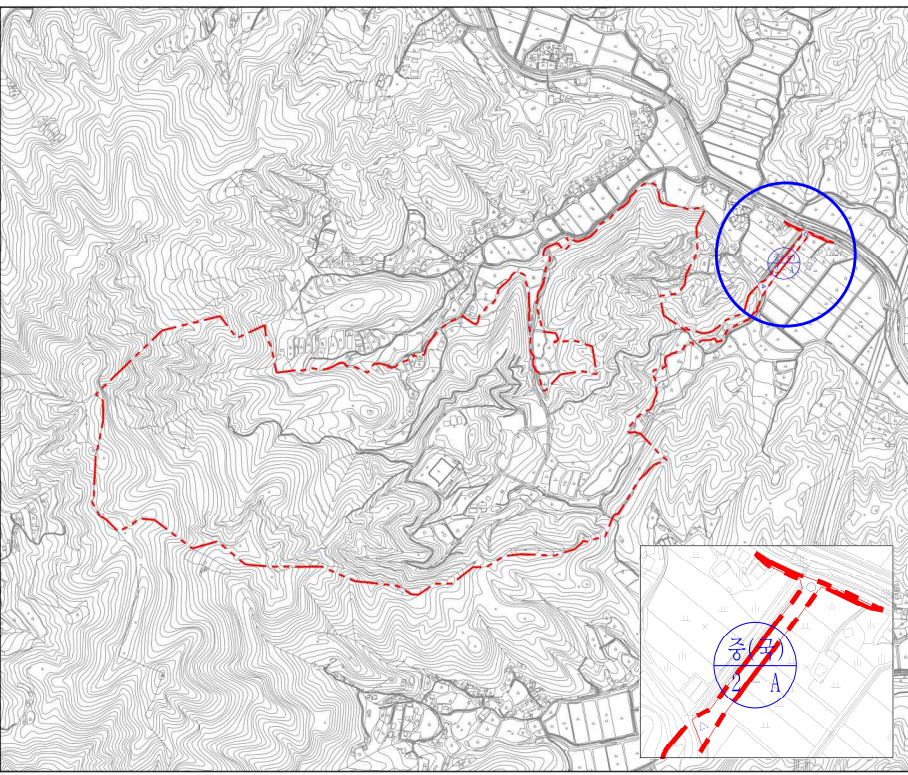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안)도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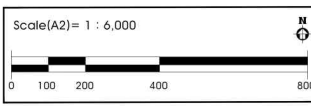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화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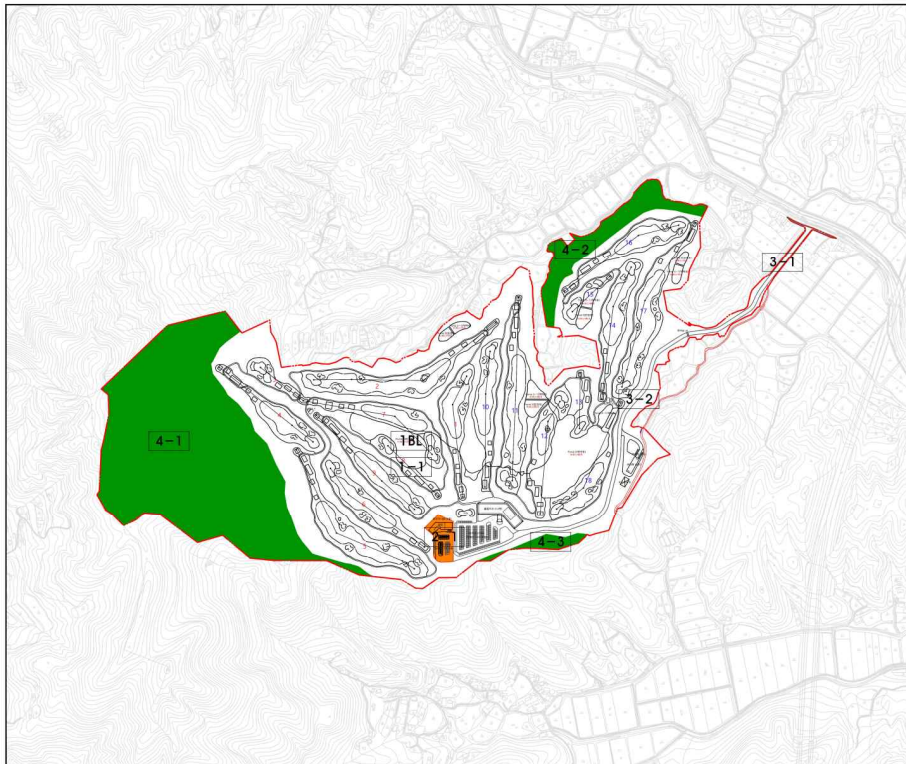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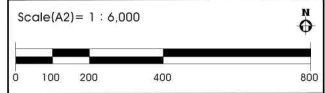
입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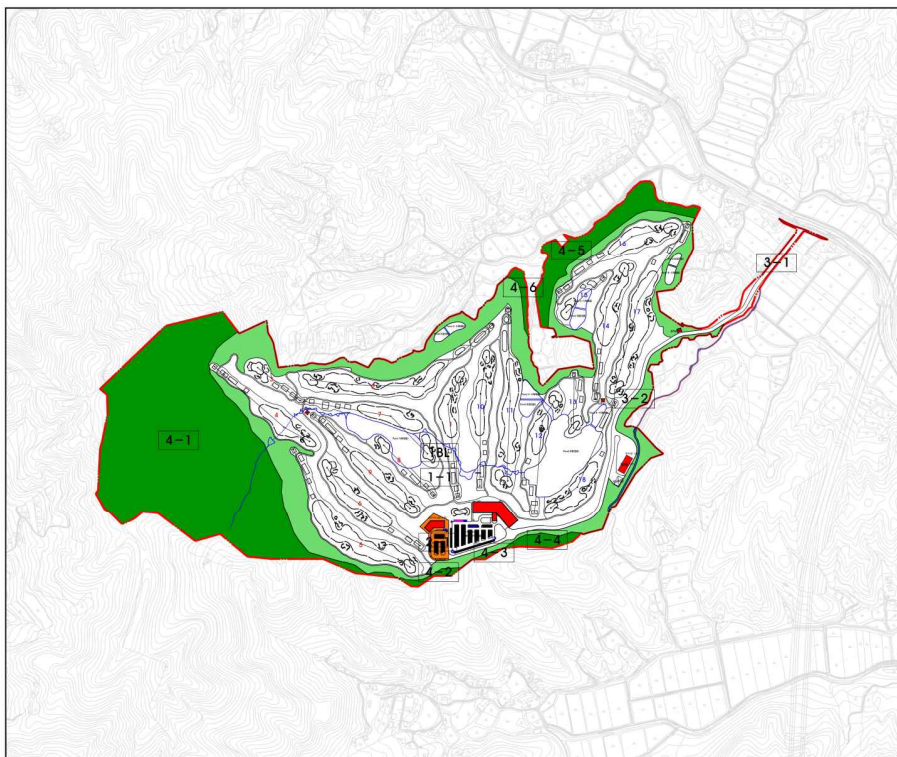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화통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BL 가구번호
 - 1 획지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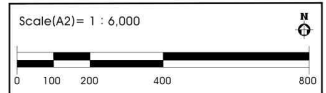
변경(안)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화통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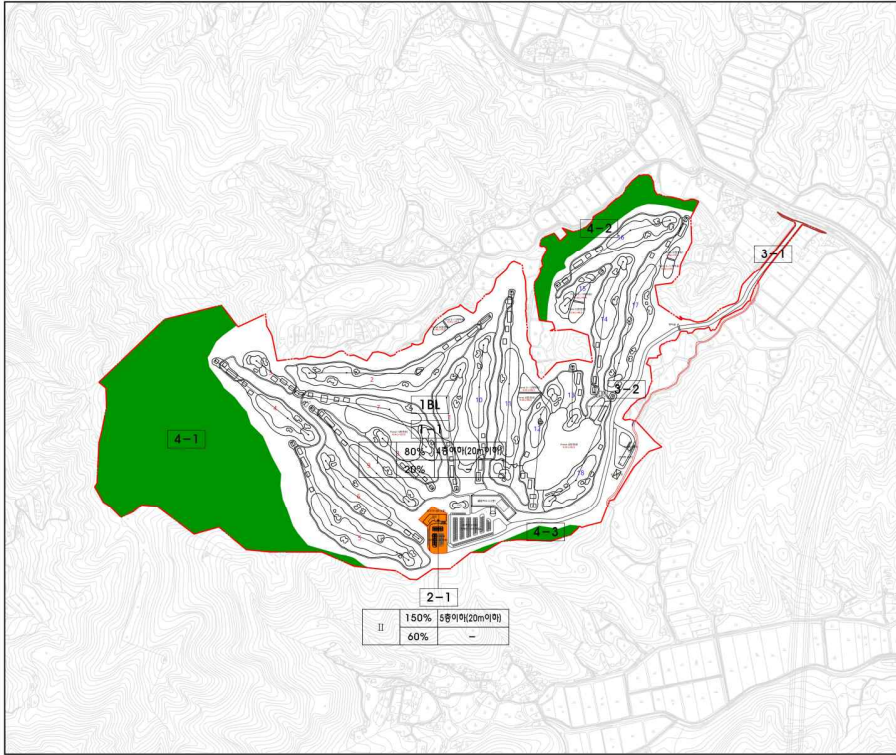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획지경계선
 - BL 가구번호
 - 1 획지번호



라.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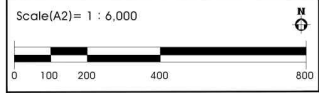
입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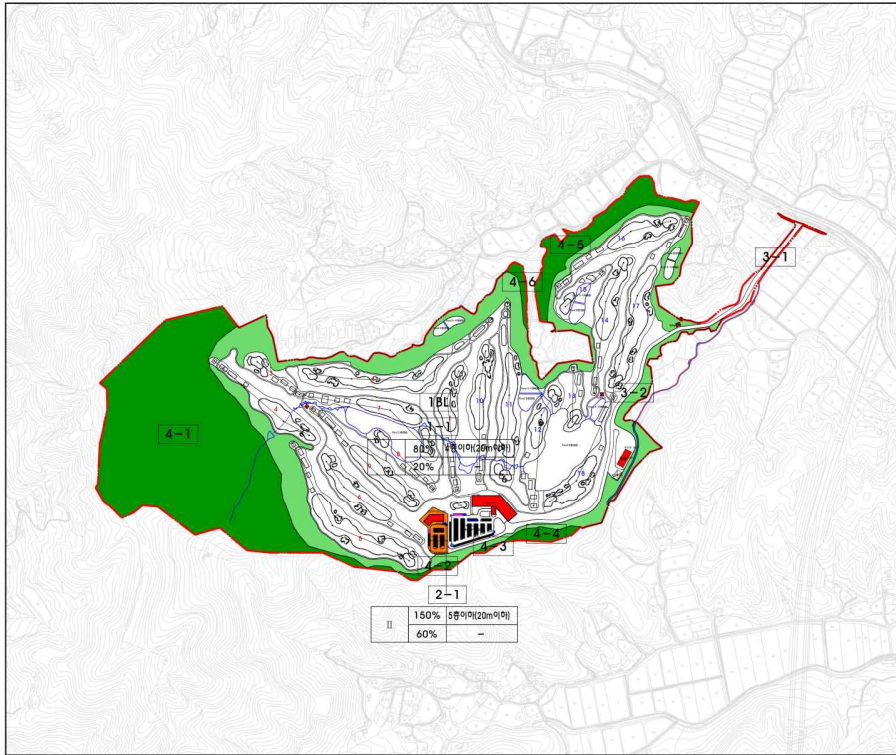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화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외지경계선
 - 1B1 가구번호
 - 1-1 외지번호
- | 용역종도 | 용적률 | 최고층수 |
|------|-------------|------|
| 건폐율 | 최저층수 | |
| 150% | 5평이내(20m이하) | 60% |
- ※ 적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 시설물 등 그 부속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 미, 체육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이, 저, 유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기숙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관광진흥법」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이, 저, 카, 라, 피, 미(안마사롱수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유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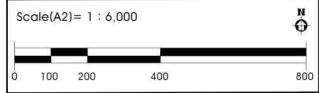
변경(안)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지구 및 정안화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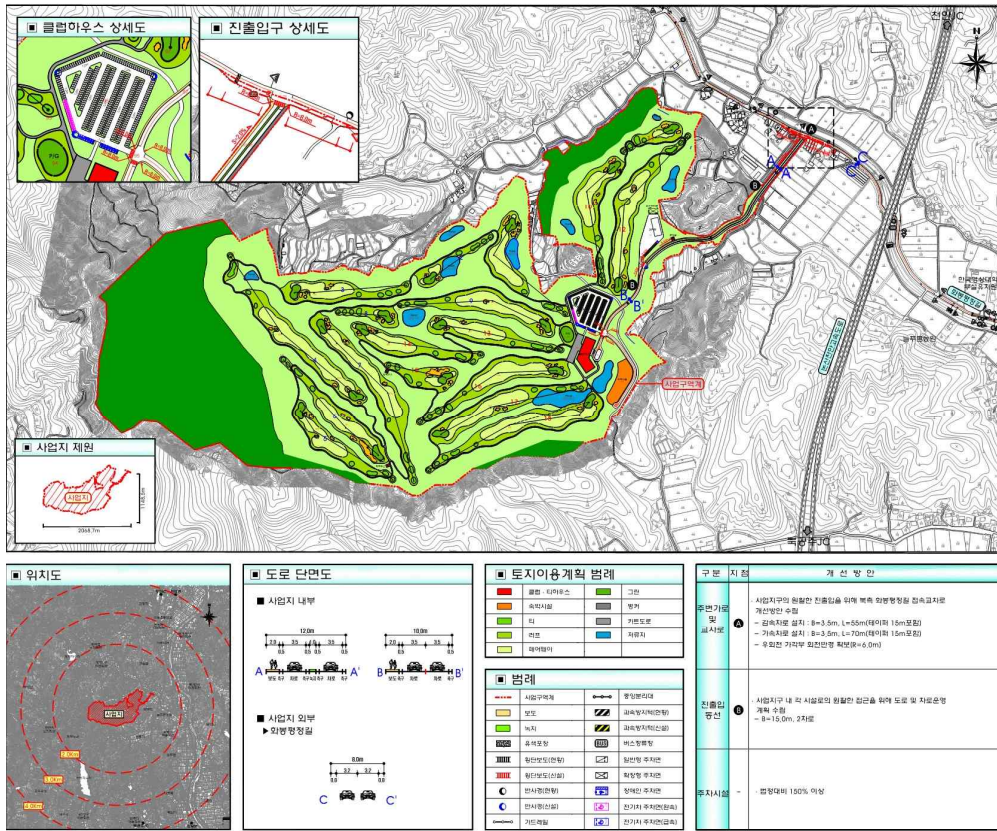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도

- 범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 외지경계선
 - 1B1 가구번호
 - 1-1 외지번호
- | 용역종도 | 용적률 | 최고층수 |
|------|-------------|------|
| 건폐율 | 최저층수 | |
| 150% | 5평이내(20m이하) | 60% |
- ※ 적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 시설물 등 그 부속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 미, 체육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이, 저, 유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규정에 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기숙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관광진흥법」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이, 저, 카, 라, 피, 미(안마사롱수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유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규정에 의한 발전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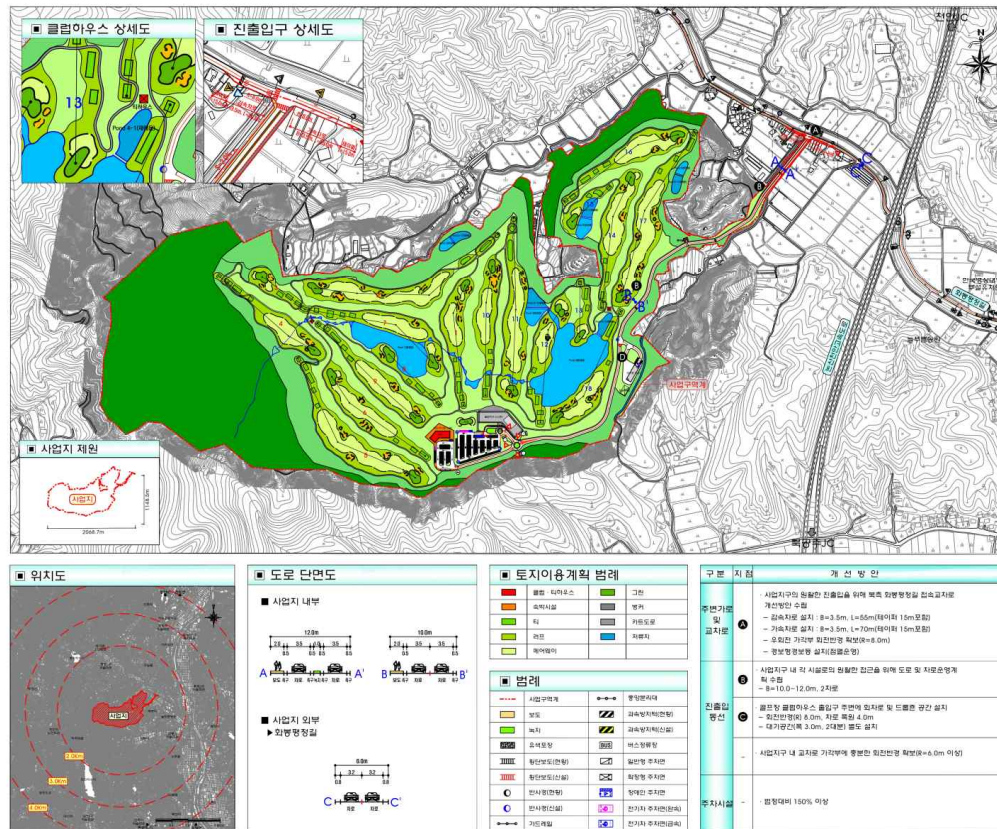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입안(안)



변경(안)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 채용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험수당 지급 조례 운영 목적(안 제1조)
- 시험 종사 위원 및 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규정(안 제2조)
 -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종사자 수당
 - 문제 출제, 채점, 선정 종사자 수당
 - 시험 관리·감독 수당
- 출장 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5. 4. ~ 2026. 5. 26.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44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kkjjgg5158@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840-2244)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kkjgg5158@korea.kr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공주시장은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수당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수 당 별	구 분		수 당 액	비 고	
출제수당	객관식	객관식(5지형, 문제당)	50,000원		
		객관식(4지형, 문제당)	45,000원		
	주관식	소문제당	35,000원		
채점수당	휴 일	1일	90,000원		
		반일	60,000원		
	평 일	1일	60,000원		
		반일	40,000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 당	5급 이상	재직자(공무원)	1일	250,000원	
			반일	150,000원	
		외부전문가	1일	300,000원	
			반일	200,000원	
	6급 이하	재직자(공무원)	1일	200,000원	
			반일	150,000원	
		외부전문가	1일	300,000원	
			반일	200,000원	
	면접위원 회의수당	재직자(공무원)	50,000원	* 교육·회의시간 2시간 초과시	
		외부전문가	100,000원		
문제심사 선정수당	주·객관식	1일	200,000원		
		반일	150,000원		
시험감독 수 당	휴 일	1일	105,000원		
		반일	70,000원		
	평 일	1일	60,000원		
		반일	40,000원		

* 비고 :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주시 공고 제2026-1404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장리 구석기공원’ 조성에 따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에 ‘석장리 구석기공원’ 명칭 삽입(안 제2조)
- 나. 석장리 구석기공원 수익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 근거 마련(안 제3조)
- 다. 석장리박물관 내 일괄 금지된 ‘취사 또는 노숙’ 행위와 전망대 카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운영 간 모순 해결(안 제6조)
- 라. 석장리박물관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규정 변경(안 제9조)
- 마. 박물관 내 편의시설 등 항목 확대(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 문화유산과(문화유산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990(우편번호 32591)
- E-mail : ksungbo77@korea.kr
- 전화번호 : 041-840-8927 / FAX : 041-840-3720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4.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월) ~ 2026. 5. 26.(화) / 22일간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유산과 석장리박물관팀 (☎ 041-840-8927)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금벽로 990 (32591)

☐ FAX : 041-840-3720 E-mail : ksungbo77@korea.kr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장리 구석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전망대, 교육원, 체험공원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안”이란 공원 및 주차장 등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료·체험료·이용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노숙하는 행위**”를 “노숙하는 행위(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급금**”을 “지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3. 교육원
4. 전망대 카페
5.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6.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석기공원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전망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어 른(19세 ~ 64세)	2,000
청소년(13세 ~ 18세)	1,500
어린이(7세 ~ 12세)	1,000

비고

1. 전망대 이용을 위한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표시간은 개장시간 10분 전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기상 악화(강풍·우천·폭설 등) 및 시설 점검 시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2. 전망대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시설 보수·점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전 공지 여부 불문
2	기상악화(강풍·우천·낙뢰 등)로 안전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입장 후 중단된 경우 포함

구 분	사 유	반 환 기 준	비 고
3	이용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등) 또는 입장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 환 불 가	입장권은 당일·당회 사용 원칙

[별표 2]

구석기공원 전망대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이용료 면제 기준

-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다.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감 면 율
1. 65세 이상인 사람	50%
2.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4.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	50%

[별표 3]

구석기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5항 관련)

1. 체험시설 이용료

시 설 명	금 액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슬라이드	3,000원	2,000원	1명 / 2회 기준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및 9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 외 기간은 비수기로 한다.

2. 체험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시설 점검·보수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전 공지 여부 불문
2	기상악화(강풍·우천·낙뢰 등)로 안전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탑승 대기 중 중단된 경우 포함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시설 고장, 운영 오류 등

구분	사유	반환 기준	비고
4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탑승 전 이용이 제한된 경우(신장 130cm 미만, 음주자, 임산부, 골격·관절 질환자, 심약자 등)	전액 반환	탑승구 진입 전 확인된 경우에 한함
5	이용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등) 또는 탑승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	이용권은 당일·당회 사용 원칙

[별표 4]

구석기공원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6항 관련)

1. 시설별 이용료

시 설 명	규 격	사용기간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비수기 및 주중(평일)	비 고
게스트 하우스	47.08m ² (4인실)	1동/1일	160,000원	100,000원	3실
야영장	나무데크	1면/1일	30,000원	30,000원	개소

가.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
-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나.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2. 이용료 참고사항

가. 게스트하우스

- 기준인원 초과 1명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1명까지로 한다.
이 경우 침구류는 추가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1일(15시 ~ 다음 날 11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숙박료 징수

나. 야영장

- 1일(15시 ~ 다음 날 11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숙박료 징수

다. 공통사항

- 위 사항은 시설 예약 후 이용료를 선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 당일 취소는 시설 이용 시작일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일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준용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 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 없이 이용 하지 않은 경우	3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p>가. 이용자 귀책 '공제'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 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p> <p>나. 이용시간: 입실 15:00 ~ 익일 11:00 기준 /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이용료 징수</p> <p>다. 반환은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별표 5]

구석기공원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 (제3조제6항 관련)

1. 이용료 감면 기준

감면 대상	시설명	감면율	
		비수기 및 주중(평일)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게스트하우스	20%	20%
다.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단, 2자녀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만 가능) 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야영장		

2. 참고사항

가.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 감면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감면 대상 중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한 가정에 1동 또는 1면만 감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u>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u> <u>이라 한다) 안</u>”이란 주차장을 포함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u>석장리 구석기공원(이하 “공원</u> <u>이라 한다)”이란 전망대, 교육원, 체험공원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u></p> <p>2. “<u>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u> <u>이라 한다) 안</u>”이란 공원 및 주차장 등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p> <p>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제3조(관람료·체험료 징수 등)</p> <p>① <u>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u></p> <p>② <u>시장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료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징수 할 수 있다.</u></p>	<p>제3조(관람료·체험료·이용료 징수 등) ① <u>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u></p> <p>② <u>시장은 박물관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u></p> <p>1. <u>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u></p>

③ 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및 감면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

제6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5. (생략)
- 6.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7. ~ 9. (생략)

②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11조(위원의 실비보상) ① (생

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 노숙하는 행위(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 시설은 제외한다)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되, 두 차례만 -----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실비보상) (현행

략)

제13조(자료구입 및 감정) ①·②
(생략)

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
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③ (생략)

제1항과 같음)

제13조(자료구입 및 감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급-----.

제23조(편의시설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교육원

4. 전망대 카페

5.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6.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7. -----
--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

②·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구소멸도시인 공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신성장 기업유치가 절실하여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등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신설
- 전문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 유치 성과를 높이고자 투자유치자문관 도입
- 또한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금 기준완화 및 관광업, 연구소, 물류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소, 관광사업, 물류사업에 대한 현행법령명으로 수정
⇒ 연 구 소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 관광사업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골프장 제외
- ⇒ 물류사업 : 물류정책기본령 시행령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기업
- 위원회 기능 강화
 - ⇒ 국내외 유치기업 지원금 심의, 기업유치성과금 심의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신설
-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신설
- 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기준완화
 - ⇒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 20억원 이상
- 관광업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
 - ⇒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50억원 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투자금액 500억원)
- 교육연수시설 등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
 - ⇒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30억원 지원 (상시고용인원 20명, 투자금액 300억원)
-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기준완화
 - ⇒ 투자금액 100억원이상 → 20억원 이상

3. 입법예고기간 : 2026. 4. 29. ~ 2026.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투자유치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투자유치실(투자유치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172 / 팩스 : 041-840-3702, 전자우편 : kyoung2350@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투자유치실 투자유치팀(☎ 041-840-2172)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팩스 : 041-840-3702, 전자우편 : kyoung2350@korea.kr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7.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차례”를 “두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의(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4.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유치 성과금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4(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공주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억원”을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의한다”를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제7조의4제1항 중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을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보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제7조의6 및 제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관광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관광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광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의7(교육연수시설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이 교육연수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수련시설 등)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중 “10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하여 시 기업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외국

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을 “시 관할 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명당”을 “초과인원 1명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지원기준」”을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원기준」 제22조”를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외국인투자”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3. ~ 5. (생략)</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란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p>

<신 설>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7.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말한다.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
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 두 차례----- . -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삭제

<신설>

<신설>

4.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생략)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신설>

-----.

④ -----
-----.

1. 2. (현행과 같음)

4.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 유치 성과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위원회-----

-- 개의하고-----
-----.

⑦ -----

--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신 설>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4(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공주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시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조금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의한다.

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 ① (현행과 같음)
- ② -----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2. ----- 20억원 -----

3. ----- 위원
회-----

- ③ -----

1. (현행과 같음)
2. -----

-----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 (생략)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신설>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

② ----- 따른 보조금의 -----
-----.

1.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제7조의6(관광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관광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①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광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의7(교육연수시설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이 교육연수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수련시설 등)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① (현행과 같음)
- ② -----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연구소·공장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생략)

④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또는 고용인원이 25
명 이상 50명 미만인 공장은 건
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
설설치비등에 대해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
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
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

1. ----- 20억원 -----

2. -----
----- 위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공유재산 지원)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

----- 외국인투자기업-----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75퍼센트, 충청남도과 시가 각각 12.5퍼센트씩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3항과 같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

② (현행과 같음)

③ -----

<후단 삭제>

④ -----

----- 외국인투자기업 -----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외국인투자 촉진

월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14조 제2항과 같다.

③ (생략)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18조(사업이행) ① ~ ③ (생략)

④ 보조금 중 국비가 포함되는 경우 「지원기준」에 의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경우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따르며,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⑤ (생략)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제22조에 따라 지방 투자기업 관리에

원 1명당 -----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외국인 투자기업-----

제18조(사업이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재정자금 지원기준-----

⑤ (현행과 같음)

⑥ -----
----- 재정자금 지원기준-----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제19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산성동 2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 및 교통과(☎041-840-7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5월 04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 붙임 1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도 : 붙임 2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3 참조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1) 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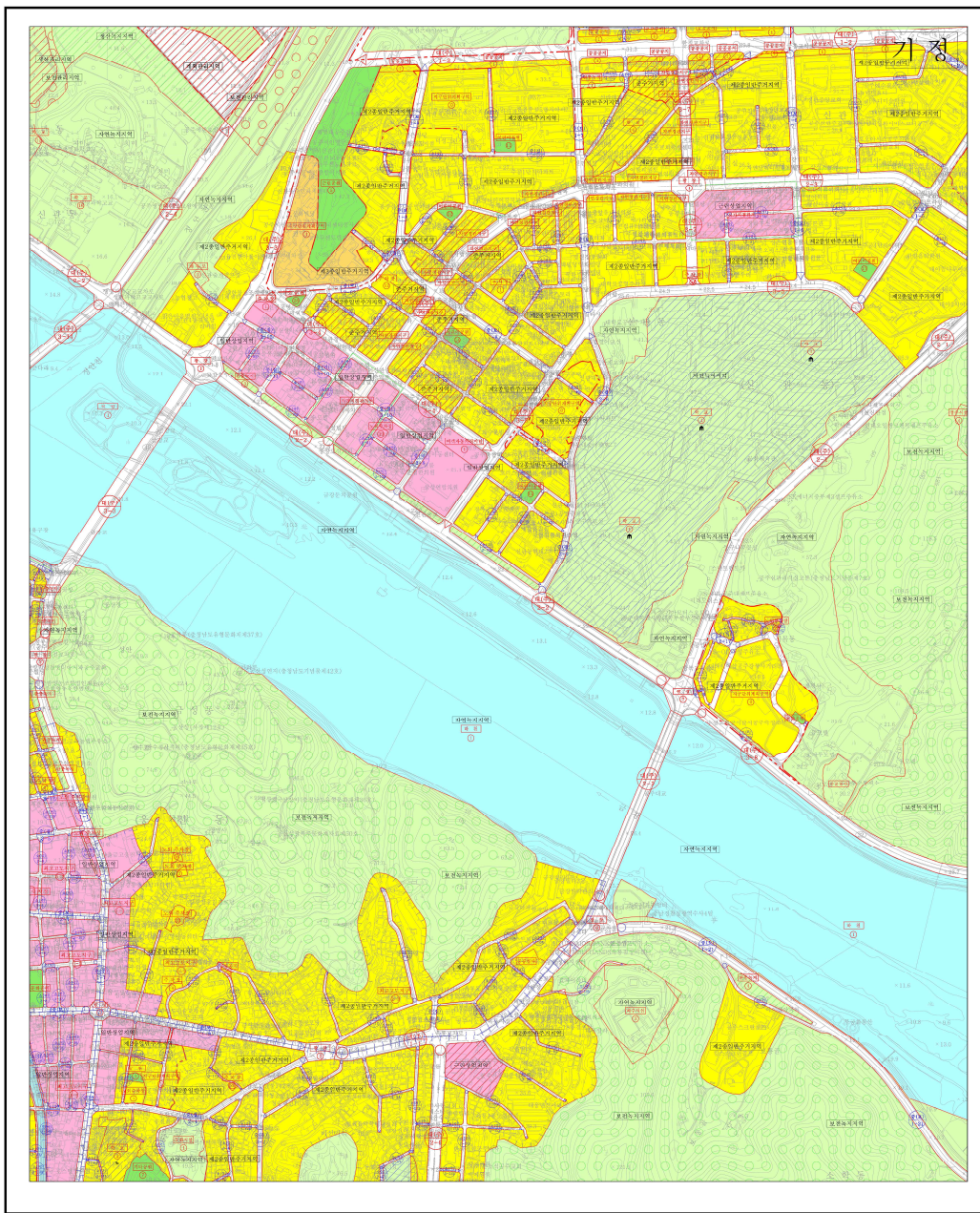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8	노외주차장	산성동 22-1번지 일원	439.6	감)439.6	-	'12.12.20	

2) 주차장 결정(폐지)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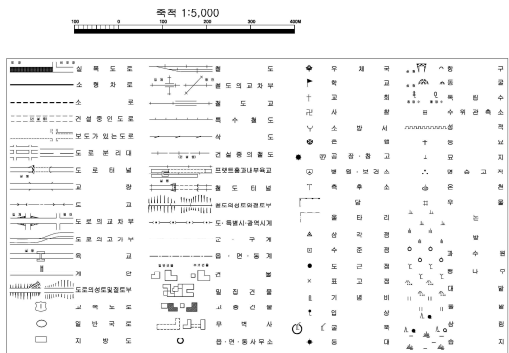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8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 폐지 - 면적 : 439.6㎡[감] 439.6㎡	· 백제왕도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산성1동 경로당 이전을 통해 노인휴식공간 제공 및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차장 폐지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도

■ 기정



면적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모선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도시(대로이상)	공원	하천, 유수지, 저수지
면적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사면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중로이하)	공원	하천, 유수지, 저수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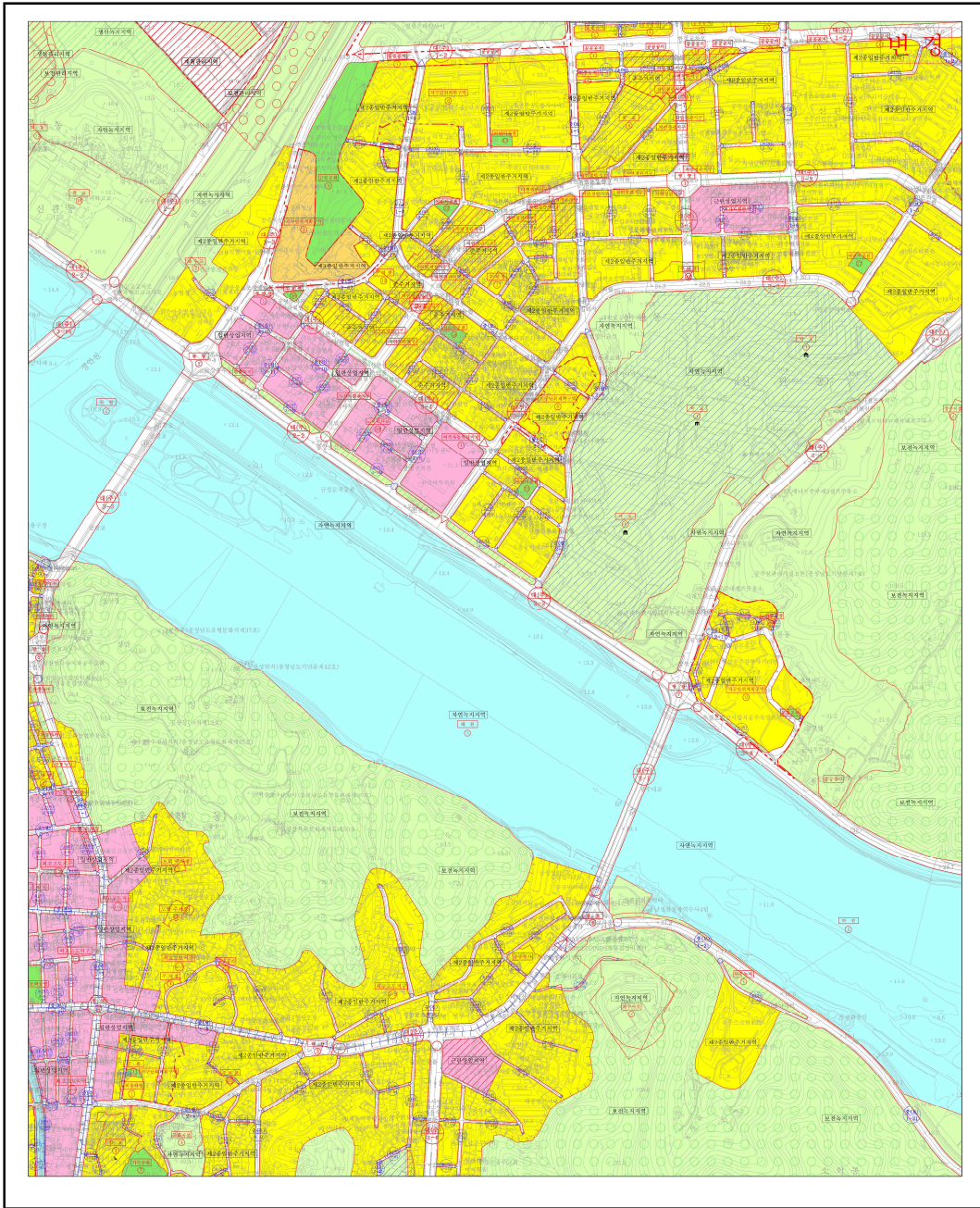


인접도엽

광주 004	광주 005	광주 006
광주 015	광주 016	광주 017
광주 025	광주 026	광주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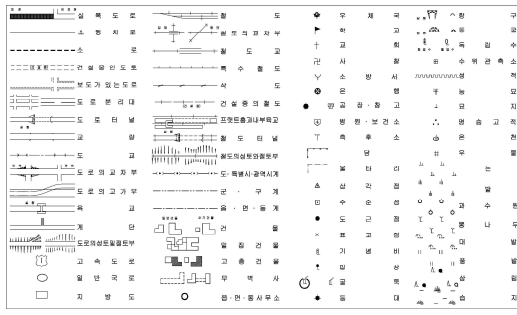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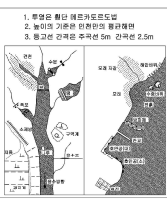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선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대로이상)	도로(중로이하)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축척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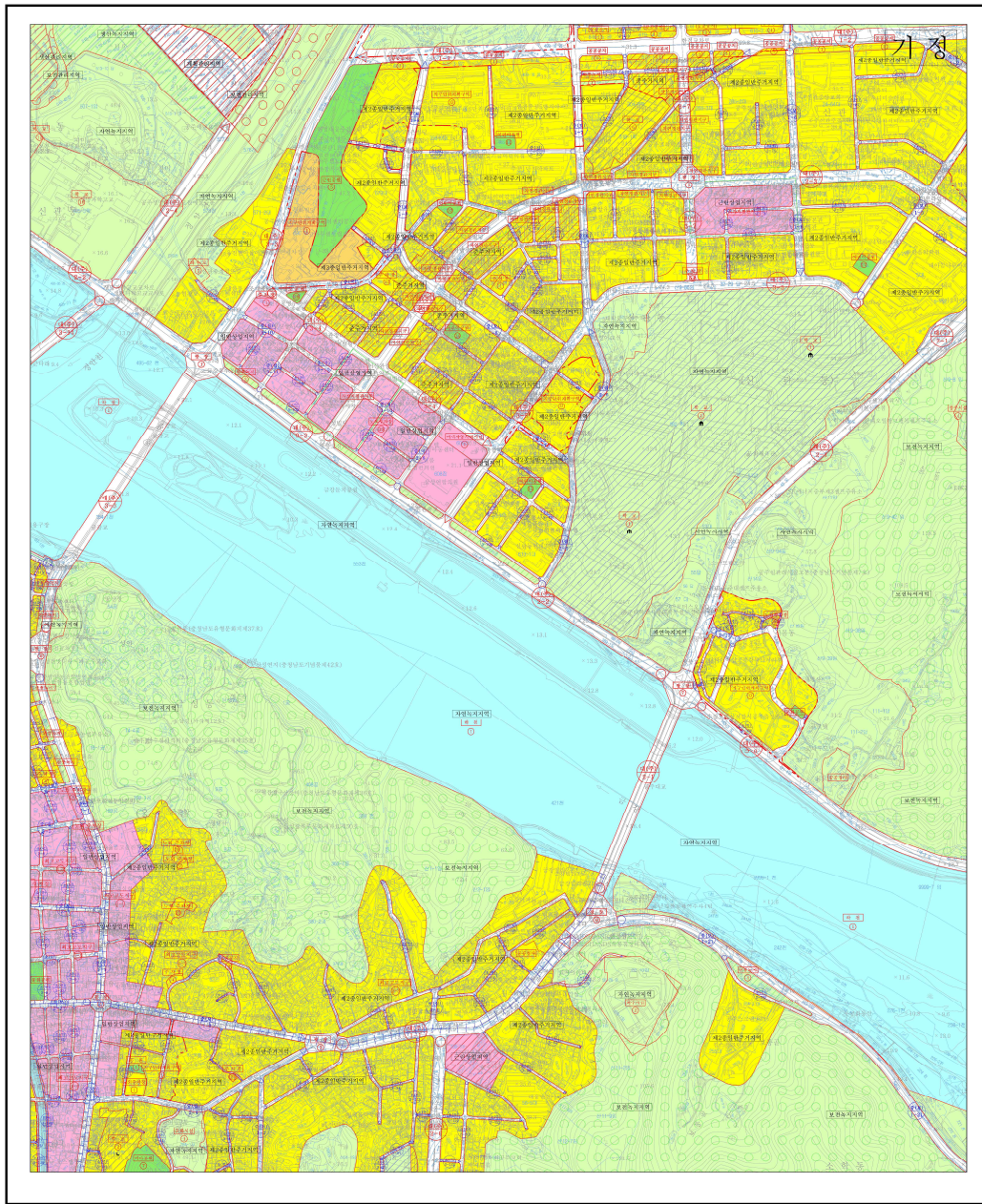


인접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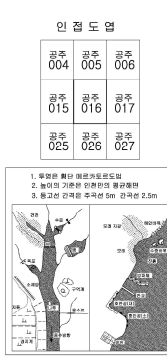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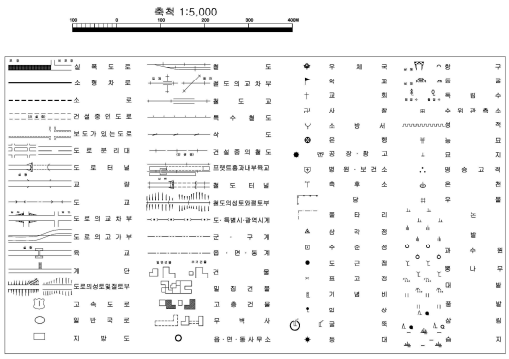
공주 004	공주 005	공주 006
공주 015	공주 016	공주 017
공주 025	공주 026	공주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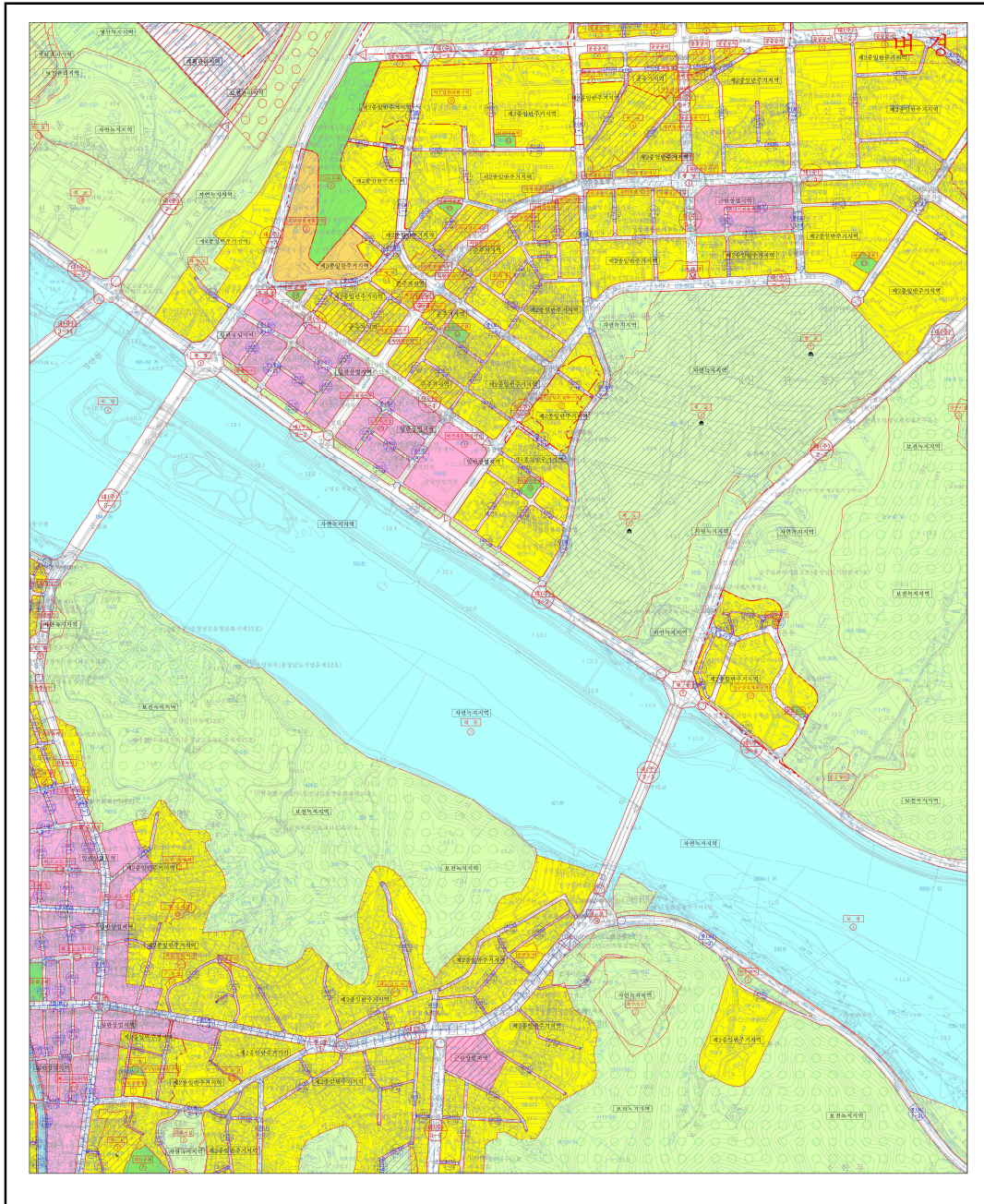
붙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에 따른 지형도면고지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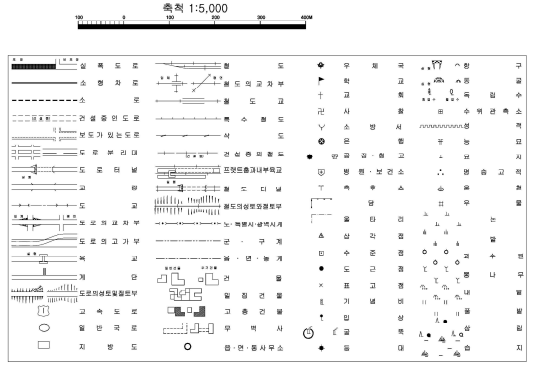
범 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보통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업관리지역		부진관리지역
		도로(대로이상)		도로(중로이하)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대로이상)	도로(중로이하)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기타 도시계획시설



인접도엽

공주 004	공주 005	공주 006
공주 015	공주 016	공주 017
공주 025	공주 026	공주 027

1. 부속은 해당 제도대로도입
 2. 넓이와 기준은 이면의 표기사항
 3. 용교인 간격은 우측면 5m 간격인 2.5m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4. 1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3-17 (상왕동) 외 10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5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4. 17.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석장리동 118번지 일원에 기조성되어 이용중인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현황 반영 및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 및 문화유산과(☎041-840-89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5월 04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 붙임 2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3 참조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석장리박물관	문화시설	석장리동 118번지 일원	16,836	증) 8,290	25,126	21.07.15 (공주시 고시 제2021-106호)	

2)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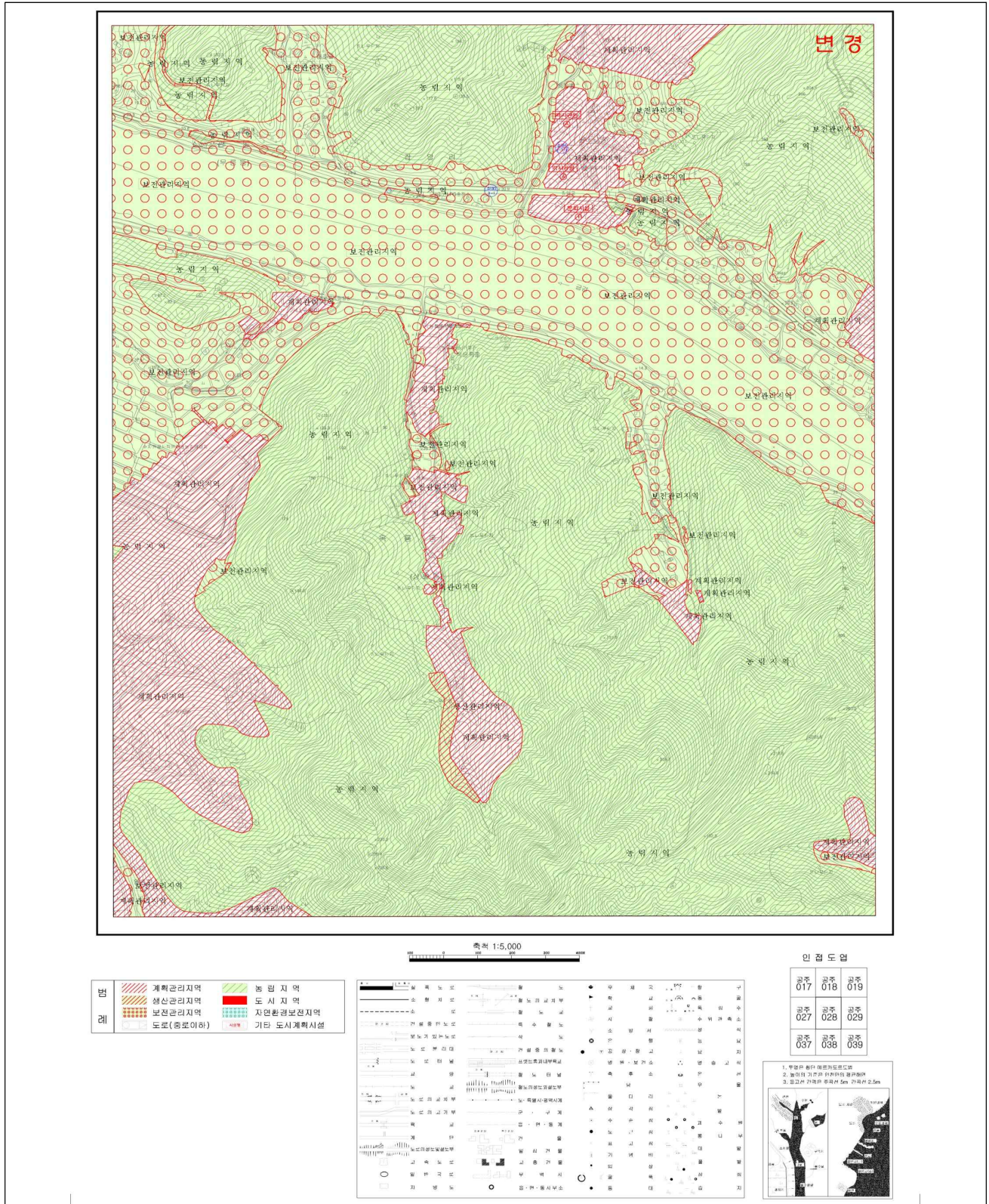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석장리 박물관	· 문화시설 변경 - 면적 : 16,836㎡ → 25,126㎡ [증) 8,290㎡]	· 기조성되어 이용중인 주차장 현황 반영 및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문화시설 변경

3)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보전관리지역	20.0%이하	80.0%이하	4층 이하
계획관리지역	40.0%이하	100.0%이하	
농림지역	20.0%이하	80.0%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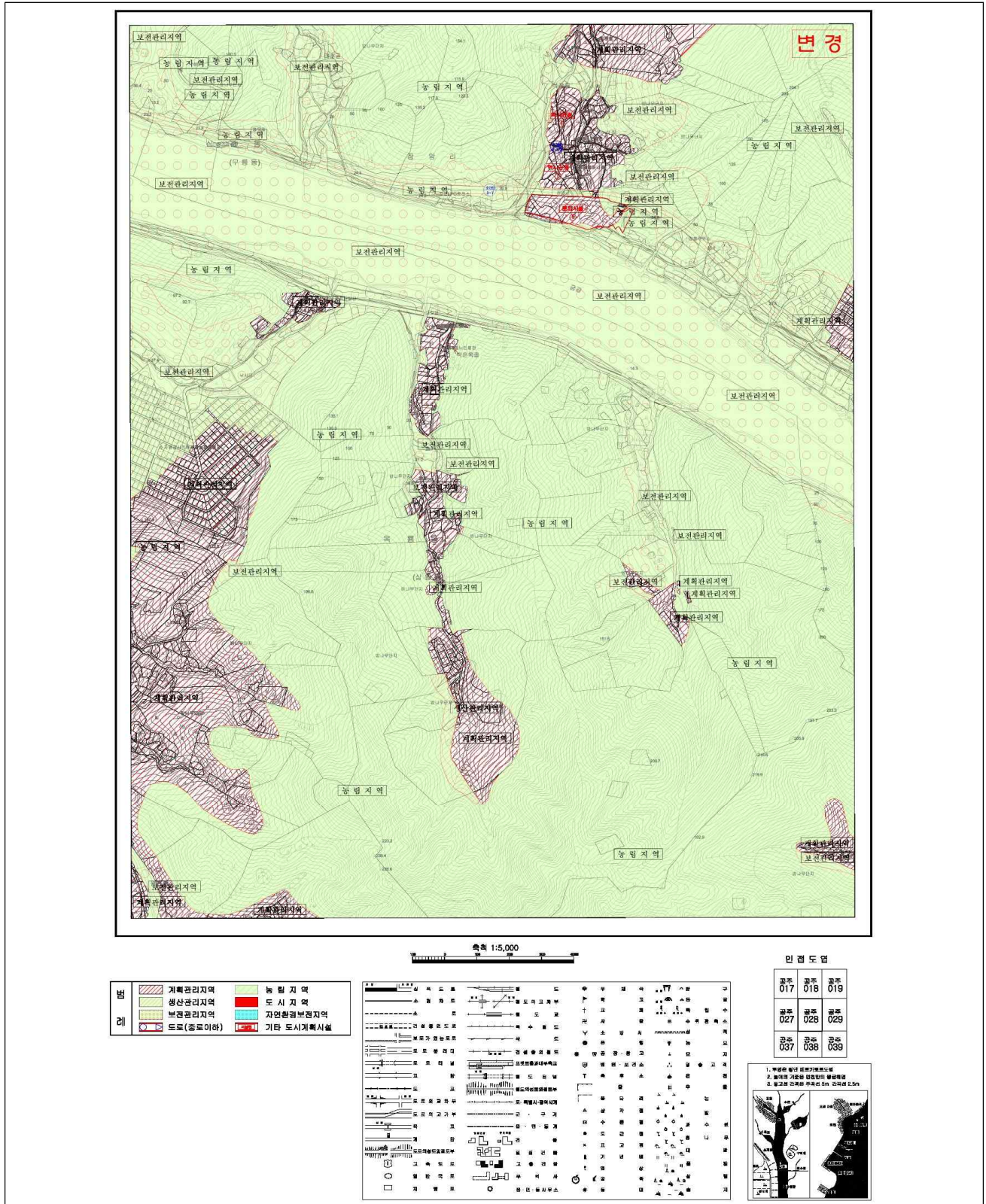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개별 건축물 입지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도



※ 원본 및 기정도면 등의 자세한 관계도서의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및 문화유산과 석장리 박물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지도



※ 원본 및 기정도면 등의 자세한 관계도서의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및 문화유산과 석장리 박물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4. 24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길 212-14 외 4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2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4. 24.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공주시 동현동 산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73)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5. 4.

공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
- 사업의 명칭 :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부지 조성)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사업의 명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신축 공사**

2. 사업의 목적

- 공주시 동현동 일원 부지를 활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청사 신축을 하고자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산1-1번지 일원
- 면 적 : 129,913㎡
- 내 용
 - 도로(중로1-동현1) : B=20m, L=477m
 - 도로(중로2-동현1) : B=15~24m, L=858m
 - 공공공지 : 27,358㎡
 - 공공청사 : 74,448㎡
 - 유수지 : 2,5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신축]

- 공공청사시설 전체면적 : 74,448㎡ 중 활용부지 **7,120.73㎡**
(사업부지 **6,600㎡**, 도로조성 활용부지 **520.73㎡**)
- 건축면적 : 2,149.41㎡, 연면적 : 6,592.48㎡

구 분	시 설 개 요	
	변 경	
부지면적	74,448㎡	
건축면적	2,149.41㎡	증)2,149.41㎡
연 면 적	6,592.48㎡	증)6,592.48㎡
건 폐 율	2.89%	증)2.89%
용 적 율	8.86%	증)8.86%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동원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신축]

- 성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5. 사업시행방법,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동원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사업착수 : 실시계획인가일(2025. 6. 16)
- 준공예정일 : 2027. 12. 31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신축]

- 착수예정일 : 2026. 9. 1.
- 준공예정일 : 2028. 6. 30.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붙임 1]

가. 토지조서

순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사업시행지 면적(㎡)	공공청사 면적(㎡)	금회신청 면적(㎡)	소 유 자	비고
	도·시	동·리								
1	공주시	동현동	1-2	대	542	542	89		공주시	
2	공주시	동현동	1-5	전	215	215			공주시	
3	공주시	동현동	1-9	전	288	288	28		공주시	
4	공주시	동현동	1-10	대	299	299	68		공주시	
5	공주시	동현동	1-11	전	229	299	229		공주시	
6	공주시	동현동	1-12	도	96	96			국토교통부	
7	공주시	동현동	1-13	도	26	26			기획재정부	
8	공주시	동현동	1-14	도	116	116			국토교통부	
9	공주시	동현동	1-15	전	94	94	94		한국농어촌공사	
10	공주시	동현동	1-16	전	187	187	187		한국농어촌공사	
11	공주시	동현동	1-17	전	341	341	341		공주시	
12	공주시	동현동	2-3	도	33	33			기획재정부	
13	공주시	동현동	3	답	136	136	136		공주시	
14	공주시	동현동	3-1	잡	293	293	169		공주시	
15	공주시	동현동	3-2	전	255	255	255		공주시	
16	공주시	동현동	3-3	전	170	170	133		공주시	
17	공주시	동현동	3-4	전	192	192	192		공주시	
18	공주시	동현동	3-5	전	761	761	761		공주시	
19	공주시	동현동	3-6	전	29	29	29		공주시	
20	공주시	동현동	3-7	전	1,458	1,458	1,458		공주시	
21	공주시	동현동	3-8	전	19	19	19		공주시	

순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사업시행지 면적(㎡)	공공청사 면적(㎡)	금회신청 면적(㎡)	소 유 자	비고
	도·시	동·리								
22	공주시	동현동	3-9	전	100	100	100		공주시	
23	공주시	동현동	3-10	답	175	175	175		한국농어촌공사	
24	공주시	동현동	3-11	답	334	334	334		공주시	
25	공주시	동현동	3-12	전	29	29	29		한국농어촌공사	
26	공주시	동현동	3-13	전	144	144	144		한국농어촌공사	
27	공주시	동현동	3-14	전	1,296	1,296	1,296		공주시	
28	공주시	동현동	3-15	전	125	125	125		공주시	
29	공주시	동현동	3-16	전	69	69	69		공주시	
30	공주시	동현동	3-17	전	135	135	135		한국농어촌공사	
31	공주시	동현동	3-18	전	226	226	226		한국농어촌공사	
32	공주시	동현동	3-19	전	21	21	21		한국농어촌공사	
33	공주시	동현동	3-20	전	492	492	492		공주시	
34	공주시	동현동	3-21	전	84	84	84		한국농어촌공사	
35	공주시	동현동	3-23	전	2,938	2,938	2,938		공주시	
36	공주시	동현동	3-24	임	264	264	264		공주시	
37	공주시	동현동	4-2	잡	1,561	1,561	854		공주시	
38	공주시	동현동	4-3	도	195	195			국토교통부	
39	공주시	동현동	4-4	답	191	191	191		한국농어촌공사	
40	공주시	동현동	9-2	답	3,630	3,630	2,691		공주시	
41	공주시	동현동	9-3	도	23	23			국토교통부	
42	공주시	동현동	9-4	도	53	53			국토교통부	
43	공주시	동현동	9-5	답	18	18	18		한국농어촌공사	

순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사업시행지 면적(㎡)	공공청사 면적(㎡)	금회신청 면적(㎡)	소 유 자	비고
	도·시	동·리								
44	공주시	동현동	9-6	답	59	59	59		한국농어촌공사	
45	공주시	동현동	9-9	답	19	19	18		공주시	
46	공주시	동현동	10	전	407	407	407		공주시	
47	공주시	동현동	11	답	248	248	248		공주시	
48	공주시	동현동	11-1	임	2,102	2,102	2,102		공주시	
49	공주시	동현동	11-2	임	825	825	825		한국농어촌공사	
50	공주시	동현동	12	답	169	169	169		공주시	
51	공주시	동현동	13-2	잡	991	991	505		공주시	
52	공주시	동현동	13-4	도	20	20			기획재정부	
53	공주시	동현동	13-5	잡	1,346	1,346	1,180		공주시	
54	공주시	동현동	105-2	전	2,830	2,830	814		공주시	
55	공주시	동현동	105-3	전	542	542	542		공주시	
56	공주시	동현동	105-5	도	33	33			국토교통부	
57	공주시	동현동	105-6	임	23	23	23	23	한국농어촌공사	
58	공주시	동현동	105-7	전	228	228	228	38.62	한국농어촌공사	
59	공주시	동현동	105-8	전	450	450	450	358.68	공주시	
60	공주시	동현동	640-9	도	473	473			국토교통부	
61	공주시	동현동	641-14	구	507	507	311		농림축산식품부	
62	공주시	동현동	641-15	구	177	177			농림축산식품부	
63	공주시	동현동	641-16	구	411	411	289		농림축산식품부	
64	공주시	동현동	642	도	896	896			국토교통부	
65	공주시	동현동	644	도	899	899			국토교통부	

순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사업시행지 면적(㎡)	공공청사 면적(㎡)	금회신청 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동·리								
66	공주시	동현동	645	도	1,144	1,144			국토교통부	
67	공주시	동현동	646-6	구	768	768	235		농림축산식품부	
68	공주시	동현동	650-10	도	21	21			환경부	
69	공주시	동현동	776-1	도	759	759			국토교통부	
70	공주시	동현동	산1-1	임	166,881	59,519	31,642		공주시	
71	공주시	동현동	산3	임	2,518	2,518	1,571		공주시	
72	공주시	동현동	산3-1	임	61	61	61		공주시	
73	공주시	동현동	산5-1	임	2,924	2,924	2,924	1,125	공주시	
74	공주시	동현동	산5-4	임	20,334	20,334	13,718	4,774.91	공주시	
75	공주시	동현동	산6-8	임	825	825	1		공주시	
76	공주시	동현동	산6-9	임	3,537	2,537	819	163.67	공주시	
77	공주시	동현동	산7-2	임	6,966	6,966	933	636.84	공주시	
합 계					237,275	129,913	74,448	7,120.73		

나. 건축물조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 계			2,149.41	6,592.48			
1	청사	동현동 105-6 외 6필지	2,149.41	6,592.48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금회신축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321번지 일원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공주 구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공주시 금흥동 321번지 일원
 - 면 적 : 39,19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공주 도심 북측에 입지하고 있는 대상지는 공주IC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시도36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세종시 및 인근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기성시가지 및 신규 개발지와 연접해있어 개발압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됨
 - 이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예정)자 : 주식회사 리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45, 에이동 902,903호(연제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붙임1 참조)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39,195	100.0	691세대 / 1,603인
주거 용지	소계	33,194	84.7	
	공동주택용지	33,194	84.7	691세대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6,001	15.3	
	도로	820	2.1	
	주차장	330	0.8	1개소
	공원	4,851	12.4	1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
 -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	173	820	1	173	820	-	-	-	-	-	-
중로	1	173	820	1	173	820	-	-	-	-	-	-

※ 면적 및 연장은 중로 1-23호선 전체 구역중 도시개발구역 내 부분만 기재

- 주차장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330	
신설	주차장	공주시 금흥동 321번지 일원	330	

○ 공간시설

- 공원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4,851	
신설	공원	공주시 금흥동 321번지 일원	4,851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 해당없음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2)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설치계획	시행주체	비고
도로	중로1-23호선	B=20~28m, L=298m	사업시행자	

※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규모는 향후 인허가 진행시 변경될 수 있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 다음날부터 14일간(법정 국·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041-840-7674)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주 구레지구 도시개발구역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	증) 39,195	39,195	-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9,195	•개발압력 증가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계획적·체계적 개발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주 구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	증) 39,195	39,19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공주시 금홍동 321번지 일원	39,195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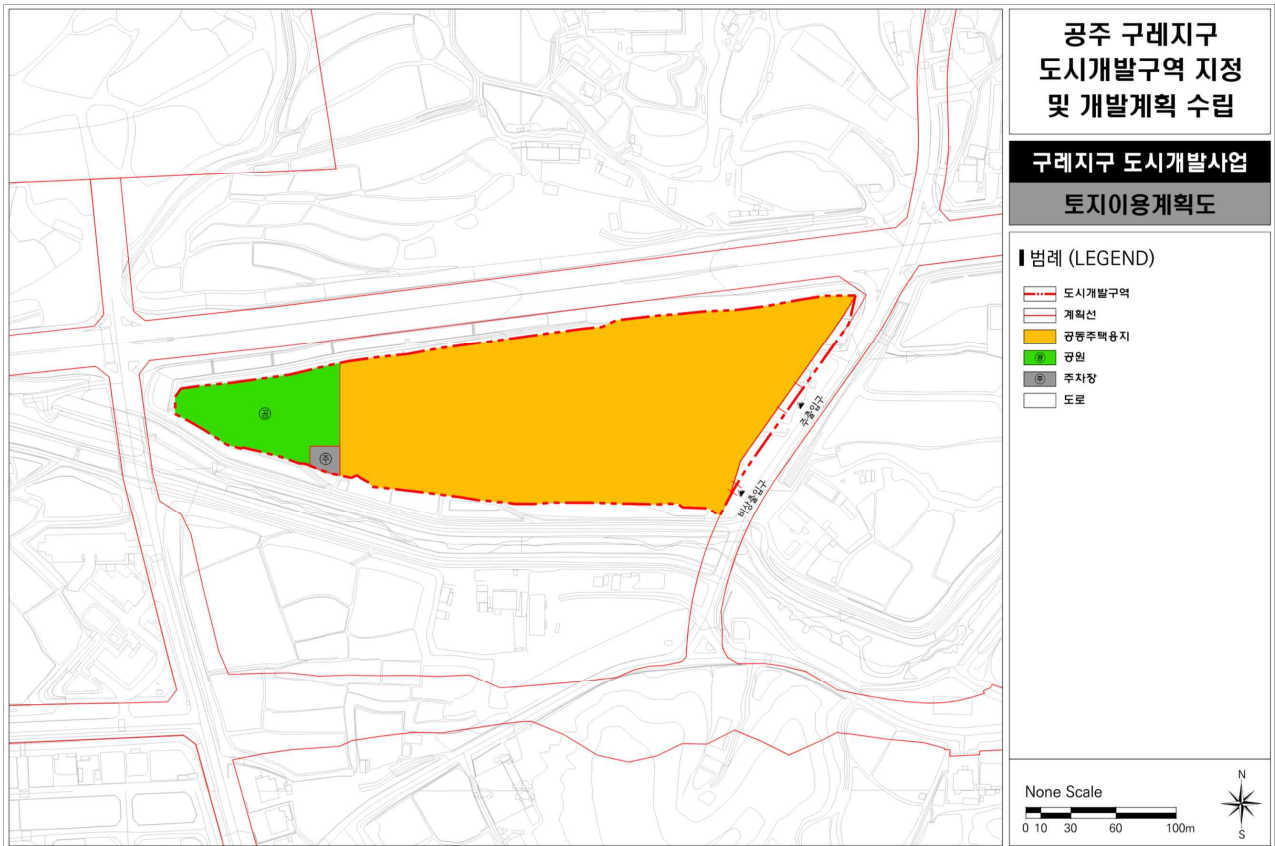
12. 기타사항

-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S=1:1,000) : 게재생략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1:1,000) : 게재생략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S=1:1,000) : 게재생략
-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바.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 도시정책과(☎ 041-840-7674)에 비치함

붙임1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계		39,195	100.0	
주거 용지	소계	33,194	84.7	
	공동주택용지	33,194	84.7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6,001	15.3	
	도로	820	2.1	
	주차장	330	0.8	
	공원	4,851	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토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계 (34필지)				44,244	39,195			
1	금홍동	163	답	522	378	충청남도 공주시 일신역길	장*애 외 4인	
2	금홍동	164	답	1,175	1,137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박*진 외 1인	
3	금홍동	165-2	답	184	184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박*우	
4	금홍동	166-3	답	413	412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이*욱	
5	금홍동	171	답	846	846		국(기획재정부)	
6	금홍동	171-1	답	22	22		국(기획재정부)	
7	금홍동	172	답	2,037	1,907	충청남도 공주시 일신역길	장*애 외 4인	
8	금홍동	172-1	답	6	6	충청남도 공주시 일신역길	장*애 외 4인	
9	금홍동	173	답	3,847	3,67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리	전*님	
10	금홍동	174-1	대	985	79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유*근 외 5인	
11	금홍동	174-2	답	1,468	1,468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김*래	
12	금홍동	174-3	답	2,167	2,10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이*주	
13	금홍동	174-4	답	114	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이*우	
14	금홍동	174-6	답	178	3		공주시	
15	금홍동	174-9	답	1,750	1,7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유*근 외 5인	
16	금홍동	320	답	570	570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노*은	
17	금홍동	320-1	답	708	708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길	김*경	
18	금홍동	321	답	3,625	3,525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덕수***** 종회	
19	금홍동	322	답	1,399	1,38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이*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0	금홍동	323	답	3,805	3,66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임*숙 외 3인	
21	금홍동	324	답	2,408	2,2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이*우 외 2인	
22	금홍동	325	답	972	9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이*우 외 2인	
23	금홍동	326	답	3,531	3,53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이*주	
24	금홍동	327	답	661	661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조*봉	
25	금홍동	327-1	답	1,613	1,613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오*찬	
26	금홍동	328	답	1,405	1,4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이*숙	
27	금홍동	329	답	1,201	1,20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이*주	
28	금홍동	330	답	2,023	2,023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여*현	
29	금홍동	330-2	답	32	32		국(기획재정부)	
30	금홍동	331-2	답	11	11		국(기획재정부)	
31	금홍동	331-7	답	505	505		국(기획재정부)	
32	금홍동	331-13	답	105	105		국(기획재정부)	
33	금홍동	542-20	천	389	90		국(국토교통부)	
34	금홍동	573	도	3,567	139		국(국토교통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5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위원회의 구성 수정
- 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다. 고맛나루 포장재 안전성 기준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 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 의원의 구성 수정, 부서명 변경, 문구 수정(제2조)
 - (당연직 위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위촉직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만 해당됨.

- 부서명 변경 : 산림경영과장 → 산림자원과장
 -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 학계·전문기관·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 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제9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 안전성 기준 2항~4항의 내용은 고맛나루 포장재 사용 품목에 대한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 분석 실시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승인신청시 및 연장심사시, GAP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고 있는바 별도의 정기 검사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음(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 ~ 2026. 5. 26(22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전화: 041-840-3441, FAX: 041-840-3764, E-mail: jaki48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농식품유통과)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 041-840-3441)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농식품유통과 (우편번호 32528)

↳ FAX : 041-840-3764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다. 학계·전문기관·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제2항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u>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경영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u></p> <p>2. <u>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u></p> <p>② (생략)</p> <p>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생략)</p>	<p>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u>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u></p> <p>2. <u>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u> <u>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u> <u>다. 학계·전문기관·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생략)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

2. 3. (생략)

②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연중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계획에 의거 품질검사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성 기준) ① -----

-----.

-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
-----.

2.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삭 제>